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건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37

발의연월일: 2024. 7. 25.

발 의 자:이건태・민병덕・정성호

서미화 · 김동아 · 김현정

박지혜 · 김성환 · 박희승

민홍철 • 전진숙 • 황정아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쳐 운행되고 있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운영비를 분담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,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을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음.

그런데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도 대도시권 내에서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쳐 운행하면서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으나,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도 이 법에 따른 재정 지원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광역교통버스의 범위에 수요응답형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3호).

법률 제 호
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3호 중 "제3조제1항제1호"를 "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"로, "여객자동차운송사업"을 "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 차운송사업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되는	제2조(정의)	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		
3. "광역버스운송사업"이란 대	3		
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·도			
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			
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			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			
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	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		
<u>여객자동차운송사업</u> 을 말한	<u>여객자동차운송사</u>		
다.	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		
	<u>운송사업</u>		